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이 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9. 5. 8.(水)

형사제2부
자료문의: (063-271-7171)
주책임자: 부장검사 이병석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김관정 (전화 063-271-1002)

제목

**수도권 호남지역 80억 원대 재활용 쓰레기 지원금 편취 및
감독기관 비리 수사 결과**

- 전주지방검찰청(형사2부, 부장검사 이병석)과 환경부(감사관실, 감사관 김영석)는 '18. 11.경부터 합동으로 폐비닐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업체들이 제출하는 실적서류의 형식적 심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허점을 악용하여,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폐비닐 회수·선별, 재활용업체 및 이를 비호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 직원의 비리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함
 - 그 결과, 수도권 지역 최대 규모의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2곳을 운영하며 회수·선별 지원금 약 23억 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를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3년간 폐비닐 42,400톤 규모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지원금 합계 약 86억 원을 편취한 회수·선별업체, 재활용업체 등 10개 업체 대표 10명을 특경법위반(사기) 등으로 인지,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하고,
 -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한국환경공단 과장 1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하여, 실적 점검·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직원 2명 및 유통센터 직원 1명 등 총 3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인지,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 ※ 총 13명 인지, 9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I

수사 경과

- '18. 6.~10. 환경부, 750여개 업체들의 실적자료 분석 등 내사를 통해 혐의 단서 포착 후 주요 업체를 관할하는 전주지검에 수사의뢰
- '18. 11. 전주지검, 합동수사단 편성(3개 검사실 투입, 환경부 특사경 2명 파견) 후, 인천, 광주, 진안 등 전국 각지의 회수·선별, 재활용 업체 10곳 동시 압수수색
- '19. 1. 업체 대표 7명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
- '19. 3. 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유통센터 등 추가 압수수색
- '19. 4.~5. 업체 대표 1명, 한국환경공단 과장 1명 등 2명 구속 기소, 업체 대표 1명, 한국환경공단 팀장 1명, 유통센터 팀장 1명 등 3명 불구속 기소

⇒ 총 13명 인지, 9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II

대표적 범죄사실의 요지[상세내역 별첨]

① 회수·선별 및 재활용업체 지원금 편취 부분[특경법위반(사기), 사기]

-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대표 A는,

수도권 지역 최대 규모의 회수·선별업체 2곳(가,나社)을 실제 운영하며 각 업체 사장인 B, C와 공모하여, 2015. 1.~2018. 10.경 폐비닐 27,600톤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지 않았음에도 인계한 것처럼 허위 계량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합계 22억 7,602만 5807원을 편취

※ 그 외 3개 회수·선별업체 대표 3명이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 합계 13억 7,734만 4,400원 편취(14,800톤 분량)

● 폐비닐 재활용업체 대표 I는,

호남권 지역 최대 규모의 재활용업체 2곳(아,자社)을 운영하며 2016. 1.~2018. 10.경 회수·선별업체로부터 폐비닐을 인계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계받아 12,725톤 규모의 재생원료 등을 생산한 것처럼 재활용실적을 신고하여 지원금 합계 21억 4,063만 3,704원을 편취

※ 그 외 3개 재활용업체 대표 3명이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 합계 27억 9,953만 9,346원 편취(18,920톤 분량)

⇒ 총 10개 업체, 3년간 수거 폐비닐 42,400톤 규모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합계 85억 9,354만 3,257원 편취

※ 폐비닐 42,400톤은 라면봉지 90억 개 규모임(국내 연간 라면 소비량 약 36억 개)

② 업체의 지원금 편취 정황 무마 등 감독기관 직원 비리 부분

●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비리 관련,

- 1) 팀장 K 및 과장 L은, 호남지역 최대 규모 재활용업체(아,자社)의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2016. 7.경 현장조사 시 업체의 시간당 재활용 가능량을 부풀려주는 방법으로 허위보고서 작성[업무방해]
- 2) 과장 L은, 2018. 10.경 회수·선별업체(마社)로부터 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품질등급을 상향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장조사 시 평가 점수 과다부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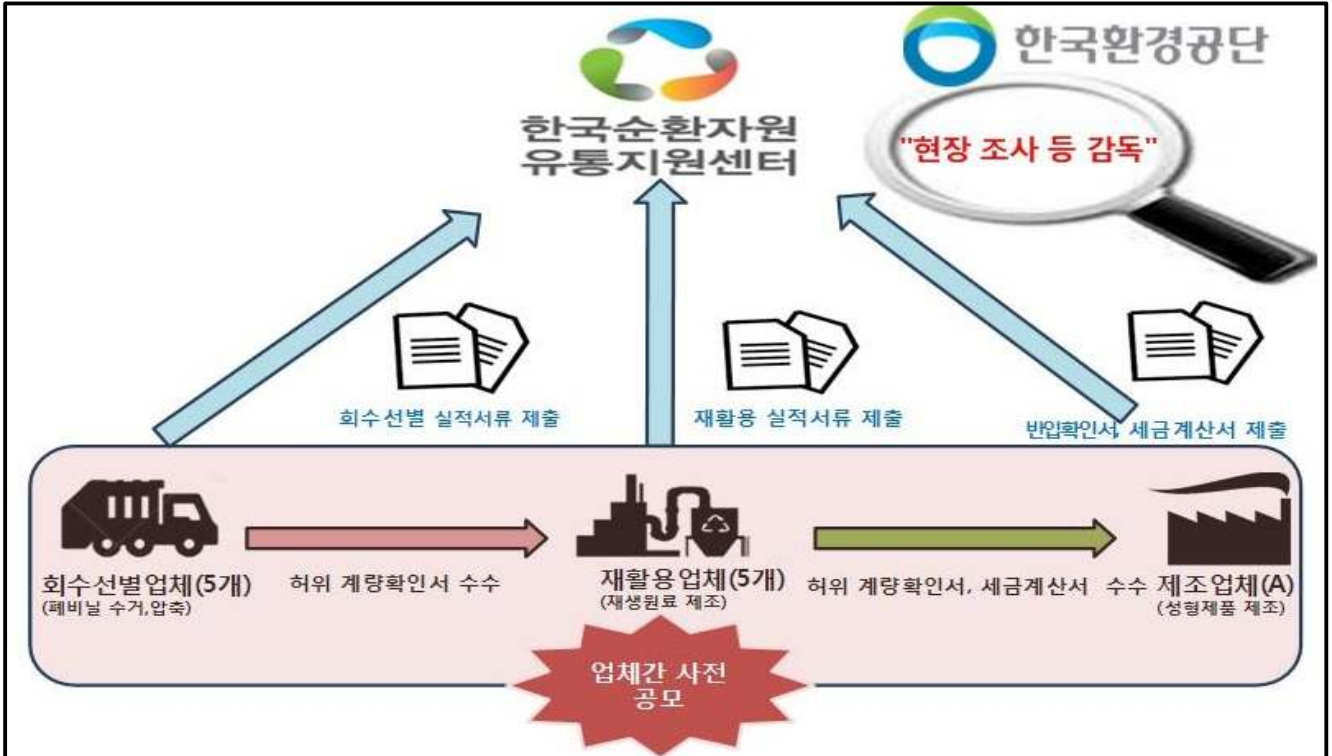
● 유통센터 본사 회수선별팀 비리 관련,

- 1) 팀장 M은, 서울·경기지역 최대 규모 회수·선별업체(가社)의 실적조사 시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2017. 12.경 업체의 허위 소명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무혐의 조치[업무방해]
- 2) 팀장 M은, 2018. 2.경 지원금 편취 사실이 확인된 호남지역 회수·선별업체(마社)로부터 제재조치를 최소화 해줄 것을 청탁받고, 금품 수수[배임수재]

III

지원금 편취 수법

<그림 1. 편취 수법 개요>



● 회수·선별, 재활용, 제조업체간 매입·매출 실적을 일치시킨 계획된 범행

회수·선별업체는 매월 재활용업체에 대한 '매출실적'을, 재활용업체는 매월 회수·선별업체로부터의 '매입실적'을 유통센터 시스템에 신고

- 시스템상 각 업체의 매입·매출 실적이 일치해야 회수·선별업체에 회수·선별 지원금이 지급되어, 각 업체의 매입·매출 신고 물량을 월별로 맞춰 신고하기 위한 '사전공모'가 필수적으로 선행됨

ex) 회수·선별업체는 화물차번호, 폐비닐 중량을 '무작위 입력'한 계량확인서 사본을 재활용업체에 Fax 또는 우편으로 송부 후, 월 1회 재활용업체와 매입·매출 신고량을 구두로 사전 조율

재활용업체는 매월 계량확인서 등 재생원료의 '매출실적'과 함께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반입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유통센터에 제출

- 재활용업체는 제조업체가 작성한 '반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재활용 지원금이 지급되어 제조업체와의 '사전공모'가 필수적으로 선행됨

ex) 재활용업체 대표 중 1인이 제조업체를 설립 후, 재활용업체로부터 화물차 번호, 페비닐 중량이 '무작위 입력'된 계량확인서 사본을 교부 받아 그 내용에 따른 허위의 반입확인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교부

● **감독기관 직원의 묵인, 조장이 수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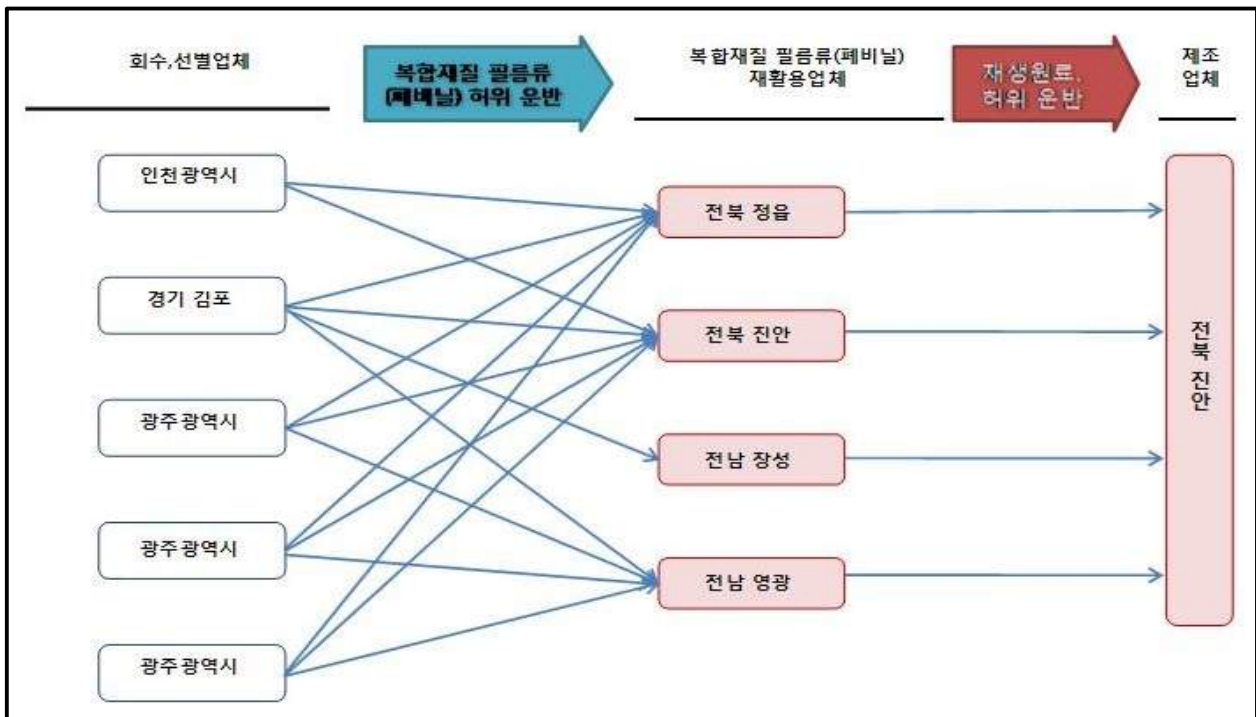
- 한국환경공단, 유통센터는 정기 현장조사를 통해 회수·선별, 재활용 설비의 용량, 규격을 확인 후, '연간 회수·선별 및 재활용 가능량' 점검

- 업체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가능량' 대비 2~3배 이상의 실적이 신고되었음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봐주기식' 현장조사 실시

● **전국적 단위로 이뤄진 범행**

- 회수·선별 및 재활용 업계 전국 1위 업체간 공모를 시작으로, 진안, 광주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기타 주요 업체 대표들과의 공모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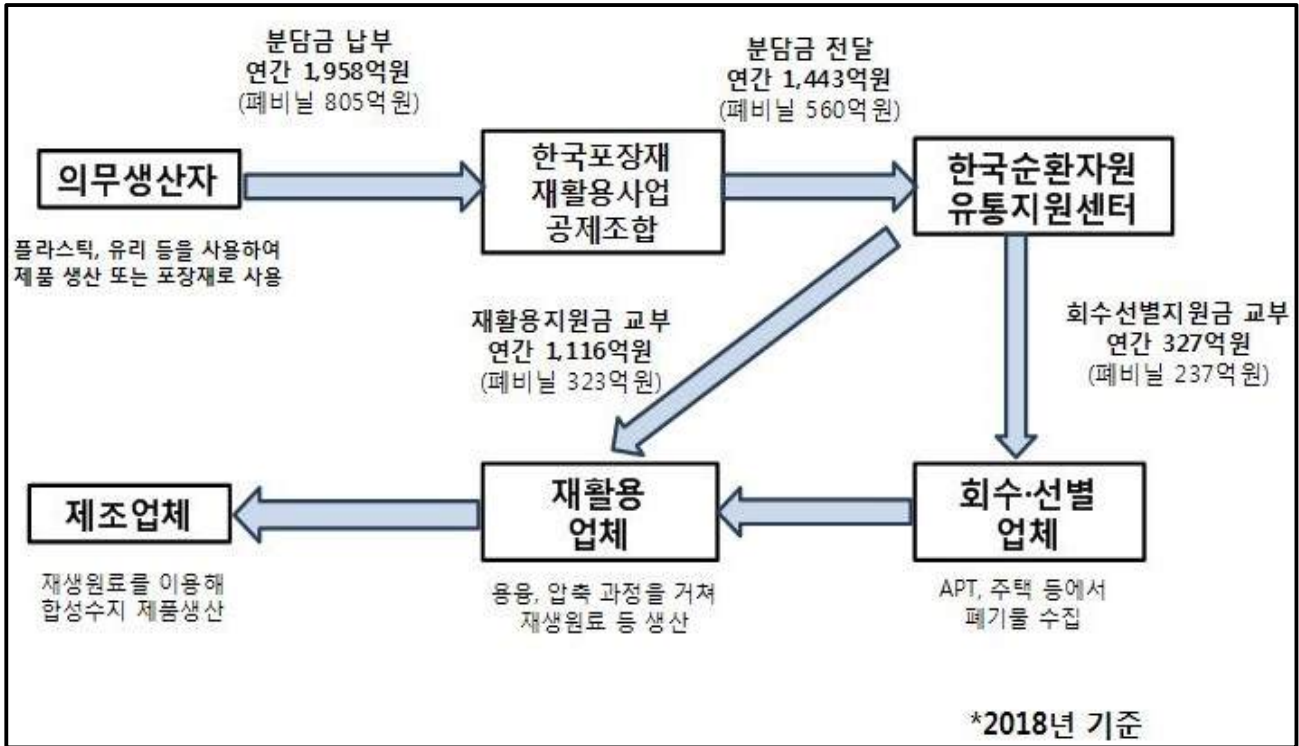
<그림 2. 허위 실적 구조도>



⇒ 사전 계획된 '단계적', '조직적', '전국적' 범행

【 별첨1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 개요 및 현황

① EPR 제도 내용 및 지원금 지급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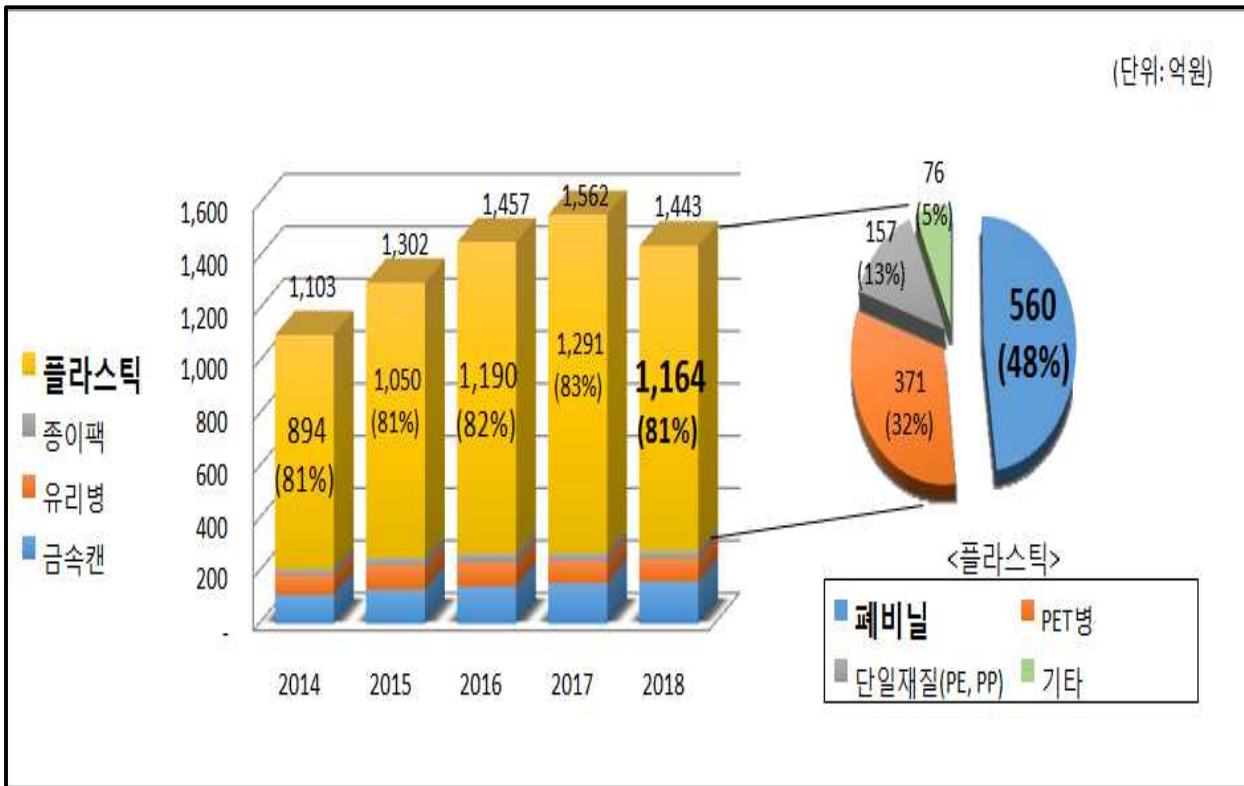
【제도 개요】

-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에게(ex. 라면 제조업체)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
- ② 의무생산자는 폐기물을 (i) 직접 수거·재활용하거나 (ii)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폐기물의 수거·재활용을 위탁하는 대신 그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

【제도의 주체별 역할】

- ① 환경부 산하 준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은 연 1회 실적조사 후 재활용실적 확정
- ② 환경부로부터 실적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유통센터는 업체 실적 확인 후 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매월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지급(분기별 ‘실적 조사’ 실시)
- ③ 회수선별업체는 폐비닐 수거 후 재활용가능 재질만을 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인계하고, 재활용업체는 폐비닐을 용융하여 성형(成形)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합성수지 제품의 재생원료로 공급하여 재활용

② 지원금 지급 현황



- 의무생산자 약 4,869개 업체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연간 약 1,958억 원 (2018 기준)으로 그 중 70%에 해당하는 1,443억 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공제조합에서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

※ '2018' 기준 분담금 최다 납부 의무생산자는 CJ제일제당(주)으로 약 40억 원 납부, 그 뒤로 농심(32억), 동서식품(23억), (주)오뚜기(17억), (주)이마트(16억) 순

- 지원금의 경우 2014년 1,100억 원 수준에 비해 최근 5년간 30%의 증가추세임

- 전체 지원금 중 약 81% 상당이 '플라스틱' 재활용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수사 대상 재활용품목인 페비닐의 재활용 지원금은 플라스틱 재활용 지원금의 절반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페비닐 재활용 지원금은 연간 약 560억 원(전체 지원금의 약 40%, 플라스틱 지원금 중 48%)으로 전국 270개(회수선별 136곳, 재활용 134곳) 업체에 지원

【 별첨2 】

피고인별 공소사실 내역

순번	피고인	업체·소속	범행방법	편취금액(원)	비고
1	A (59세)	회수선별 가,나사	① 나OO와 공모하여, 회수선별 지원금 편취 ② 다OO와 공모하여, 2회수선별 지원금 편취	① 9억 3,490만5,067 ② 13억 4,112만740	'19. 4. 8. 구속 기소
2	B (50세)	회수선별 가사 (인천)	가OO와 공모하여, 2015. 1.~ 2018. 10.경 허위 계량증명서 제출하여 회수선별 지원금 편취	9억 3,490만5,067	'19. 1. 8. 구속 기소
3	C (45세)	회수선별 나사 (김포)	가OO와 공모하여, 2015. 8.~2018. 10.경 허위 계량증명서 제출하여 회수선별 지원금 편취	13억4,112만740	'19. 1. 8. 구속 기소
4	D (51세)	회수선별 다사 (광주)	2016. 5.~2018. 10.경 허위 계량증명서 제출하여 회수 선별 지원금 편취	7억1,434만9,097	'19. 1. 31. 구속 기소
5	E (48세)	회수선별 라사 (광주)	2017. 11.~2018. 10.경 허위 계량증명서 제출하여 회수 선별 지원금 편취	2억3,331만9,026	'19. 1. 8. 불구속 기소
6	F (45세)	회수선별 마사 (광주)	2016. 8.~2018. 4.경 허위 계량증명서 제출하여 회수 선별 지원금 편취	4억2,967만6,277	'19. 5. 8. 불구속 기소
7	G (53세)	재활용 바사 (진안)	2016. 6.~2018. 12.경 허위 계량증명서 제출하여 재활 용 지원금 편취	8억4,785만2,840	'19. 1. 3. 구속 기소
8	H (43세)	재활용 사사 (정읍)	2016. 4.~2018. 10.경 허위 계량증명서 제출하여 재활용 지원금 편취	10억7,797만2,522	'19. 1. 3. 구속 기소
9	I (58세)	재활용 아사 (영광)	2016. 5.~2018. 10.경 허위 계량증명서 제출하여 재활용 지원금 편취	10억8,360만4,357	'19. 1. 3. 구속 기소
		재활용 자사 (영광)	2016. 1.~2018. 10.경 허위 계량증명서 제출하여 재활용 지원금 편취	10억5,702만9,347	
10	J (56세)	재활용 차사 (장성)	2016. 5.~2018. 10.경 허위 계량증명서 제출하여 재활용 지원금 편취	8억7,371만3,984	'19. 1. 3. 구속 기소
11	K (팀장, 55세)	한국 환경공단	2016. 7.경 위 I 운영의 재활용업체 지원금 편취 정황 확인하고도, 허위의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 성, 제출		'19. 4. 25. 불구속 기소
12	L (과장, 53세)	“	K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현장 조사 확인서 작성, 제출		'19. 4. 25. 구속 기소
			2018. 10.경 F로부터 회수품 등급상향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현장조사 실시		
13	M (팀장, 43세)	한국순환자 원유통지원 센터	2017. 12.경 A와 B가 운영하는 회수선별업체 지원금 편취 정황 확인하고도 업체의 허위 소명 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무혐의 조치		'19. 5. 8. 불구속 기소
			2018. 2.경 F로부터 제재조치를 경감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		